강남대학교학칙

제6장 전 부 · 전 과

제20조(전부·전과) ① 전부·전과는 3학기이상 6학기이내 진급대상자에 한하여 허가하며, 신청은 신청학기 소정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03.01, 2008.08.01, 2009.08.24, 2010.12.23, 2012.10.25, 2013.10.18,2015.05.01>
② 사범대학의 학과는 입학정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다. [신설 2012.10.25]
③ 전부·전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 [개정 2015.06.01][개정 2015.06.01]

강남대학교학칙시행세칙

제9장 전부·전과

제53조(전부·전과) ① 전부·전과는 학칙 제20조 제1항의 허용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.
② 전부·전과는 1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고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이 총 평균평점 3.0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자율전공계열로 입학한 자와 학적변동자로서 재적하였던 학부(과) 전공이 폐지된 경우는 성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 <개정 2008.10.15>
③ 다른 계열의 학생이 사범대학의 학과로 전과를 지망할 경우에는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를 과할 수 있다.<개정 2008.03.01>
④ 전부·전과는 재학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. 다만, 자율전공계열로 입학한 자 또는 복학·재입학자로서 재적하였던 주야간의 학부(과) 또는 전공이 통합되었거나 소속이 변경된 경우는 2회까지 허가할 수 있다.
⑤ 자율전공계열로 편입학한 자는 1학기 이수 후부터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.
제54조(절차) 전조의 자격이 있는 학생 중 전부·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교내종합전산망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된 신청서는 전입학부(과)장의 승인을 거쳐 교무팀에서 최종 처리한다. <개정 2008.08.01, 2010.12.23, 2016.06.21> [개정 2016.06.21][개정 2016.06.21]
제55조(전부·전과의 결정) ① 전부·전과의 결정은 지원자가 많을 경우 전학년의 평균 성적순위에 의하고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취득학점이 많은 자로 하며,취득학점이 같을 경우는 시험으로 한다.
② 전부·전과를 한 자는 전입한 학부(과)에 지정되어 있는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③ 전부·전과로 계열이 변경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등록금 차액을 납부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.
제56조(전부·전과제한)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부·전과를 허가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12.23, 2013.01.02, 2016.09.02>

1. 예체능계열 학부(과) 입학자
2. 미래인재개발대학 입학자 (단, 미래인재개발대학 내의 학부(과)로의 전부·전과는 허가)
3. 기독교학과 입학자
4. 특기자 전형 입학자
5. 편입학자 (단, (융복합/공과대학)자율전공학부로 편입학한 자의 전부·전과는 허가)

② 다음 각 호로의 전부·전과는 허가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6.09.02>

1. 예체능계열 학부(과)
2. 미래인재개발대학 내의 학부(과) (단, 미래인재개발대학 내의 학부(과)간의 전부·전과는 허가)
3. 주·야간 동일 학부(과)
4. (융복합/공과대학)자율전공학부

③ 복학 또는 재입학의 경우 재적하였던 주야간의 학부(과) 또는 전공이 통합되었거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09.02, 2016.11.18> [개정 2016.11.18][개정 2016.11.18]